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70
----------	-----

2019년 09월 04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08. 07.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19. 08. 16.
3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 09월 0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, 종사자 처우 개선,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‘서울시 사회서비스원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‘서울시 사회서비스원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‘서울시 사회서비스원’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1) 출연·출연의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
- 관련법령
 - 공동법령 :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 - 조 례
 - ▶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) 주요사업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
-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
-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·개발
-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,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
-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'20년 예산(안) : 36,011백만원

3) 출연의 필요성

-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,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필요

- 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,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및 품질 관리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
-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,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의거하여,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「지방재정법」의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출자·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 절차를 강화함에 있음.
-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¹⁾되어 있으므로,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.

1) 신규대비표

지방재정법 [법률 제11900호, 2013.7.16., 일부개정]	지방재정법 [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, 일부개정]
<p>제18조(출자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(出資)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

2 서울시 복지재단 일반현황

가. 설립 목적 관련

- 서울시사회서비스원(이하 “사회서비스원”)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,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,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설립되었으며, 동 조례 제4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

<표 1>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
2.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
3.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·회계·법무·노무 등에 관한 상담·자문
 - 가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·설치 및 운영
 - 나.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
4.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·개발
5.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
6.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,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
7.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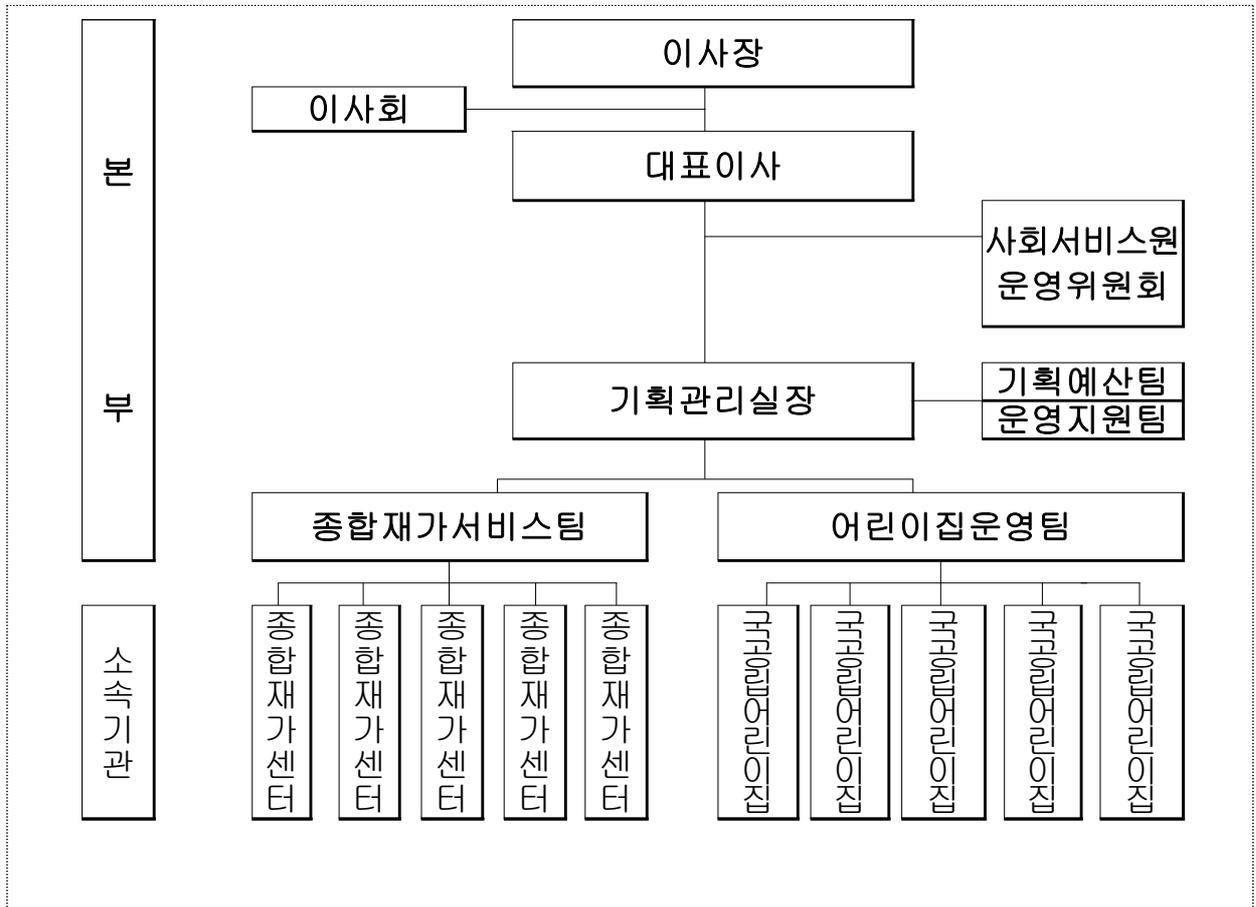
- 사회서비스원은 2018년 설립되어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이라는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종사자 직접 고용 및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질과 서비스 질 제고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음.

나. 조직 및 인력 관련

- 재단 정원은 2019년 8월 현재 정원 572명, 현원 89명(파견공무원 3명 포함)이며, 본부인력은 1실 4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, 산하시설은 종합재가센터 5개소,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로 편성되어 있음.

<표 2>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직도

(’19. 8. 19. 기준)



-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현재 인력 정원은 572명이며, 현원 89명(파견공무원 3명 포함)으로 2차 채용인력(114명)은 센터 개소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중임.

<표 3>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현정원표

■ 인 력 : 정원 572명 / 현원 89명 ※ 파견 공무원 3명 포함

<2019. 8. 19.기준>

구분	계	상근 임원	일반행정						서비스지원			전문서비스			보육			기능
		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4급	5급	6급	나급	다급 (요양)	다급 (활동지원)	4급	5급	6급	
정원	572	1	-	1	-	7	9	5	5	22	6	10	279	154	5	1	64	3
현원	89	1	-	1	-	5	8	5	1	11	1	2	28	24	1	1		-

※ 2차 채용인력(114명)은 센터 개소시기에 따라 순차적 임용 중(본부(1), 성동(48), 은평(16), 강서(2), 노원(1) 배치되어 근무 중이며, 강서(15), 노원(18), 마포(14)은 개소에 따라 순차 발령 예정임.)

다. 예산 관련

- 집행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다음 표와 같이 편성·지원하고 있음

<표 4>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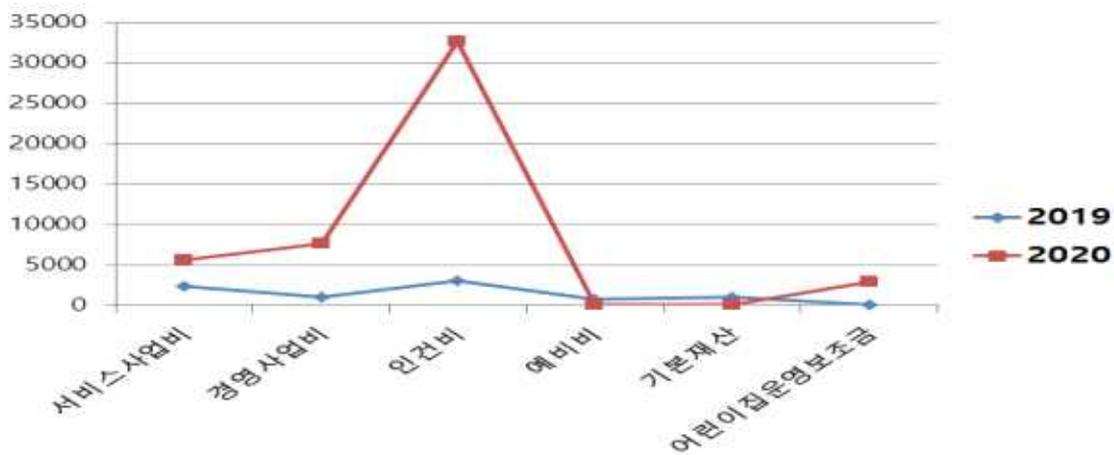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, %)

과 목	2020년	2019년	증 감	증감비율
계	48,800	8,154	40,646	498.48
1. 서비스사업비	5,618	2,406	3,211	133.46
○ 서비스 개발	1,600	469	1,131	241.15
○ 소속기관 설치지원	4,018	1,937	2,080	107.38
2. 경영사업비	7,603	1,062	6,541	615.91
○ 본부 운영지원	7,603	762	6,841	897.77
○ 전산시스템 구축	-	300	△ 300	
3. 인건비	32,722	2,986	29,736	995.85
○ 본부	2,731	585	2,146	366.84
○ 소속기관	29,991	2,401	27,589	1,149.06

4. 예비비	-	700	△ 700	-
5. 기본재산	-	1,000	△ 1,000	-
6. 어린이집운영보조금	2,858	-	2,858	-

- 2019년 예산 대비 2020년 예산(안)을 보면, 인건비 항목에서 높은 증가 비율('19년 예산 대비 약 995.85%)을 보이고 있음.
- 예산 증가의 주요원인으로는 '20년도의 본부인력('19년 22명에서 '20년 50명)의 증원 예정 예산액이 반영되었으며, 소속기관의 경우 센터 및 어린이집 확대(종합재가센터 5→15개소, 어린이집 5개소)에 따른 직원 증가('19년 550명에서 '20년 927명)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됨.

<표 1>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19년도 및 2020년도 출현금 현황



-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종합재가센터 4개 유형을 자치구(성동구, 은평구, 강서구, 노원구, 마포구)에 개소한 바,
 - 최초 개소한 성동종합재가센터는 간호특화형(방문요양+노인돌봄+장애인활동지원+방문간호)으로 지난 7월에 개소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며, 은평종합재가센터와 강서종합재가센터는 기본형 모델(방문요양+노인돌봄)로 8월에 개소하였음.

- 연말까지 개소 할 예정인 노원종합재가센터는 확대형 모델(방문요양+노인돌봄+장애인활동지원), 마포종합재가 센터는 통원형 모델(방문간호+노인돌봄+주야간보호)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.
- 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은 앞으로 3년간 돌봄서비스의 시급성 및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, 보육(국공립어린이집), 장애인활동지원(바우처)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될 예정임.
-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의 소속기관의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해 출연금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재정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자체수익사업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한 재정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은 필요하다 사료됨.

■ 2019년 수입예산

(단위:백만원)

과 목	2019년	2018년	증 감
계	8,154	-	8,154
1. 영업수익	951	-	951
○ 자체사업수익	951	-	951
2. 영업외수익	7,203	-	7,203
○ 이자수익	24	-	24
○ 출 연 금	7,179	-	7,179

■ 2020년 수입예산(안)

(단위:백만원)

과 목	2020년	2019년	증 감
계	48,801	8,154	40,646
1. 영업수익	12,766	951	11,815
○ 자체사업수익 (참고자료 1)			
중합재가센터	9,908	951	8,957
어린이집	2,858	-	2,858
2. 영업외수익	36,035	7,203	28,832
○ 이자수익	24	24	-
○ 출 연 금	36,011	7,179	28,832

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사회서비스원의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,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음.
- 다만, 소속기관의 확대에 따른 출연금의 확대편성 및 인력 관리(550명('19년) → 4,126명('22년)) 등 재단 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제공 기관 확대 및 재정 지출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재단 본부의 세밀한 관리가 요망됨.

■ 20년 종합재가센터 세입 예산액 : 9,907,965천원

※ '20년 세입 예산액의 이용자 수는 '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표준운영모델'을 적용

(단위 : 천원)

년도	분야(서비스)	산출근거	금액	비고
'20년	장기요양	120명×922천원×9개월×5개소(19년) 30명×922천원×6개월×10개소(20년)	6,642,720	19년5개소 20년0개소
	돌봄SOS	70건×46천원×9개월×5개소(19년) 70건×46천원×6개월×10개소(20년)	339,055	
	장애인활동지원	70명×12천원×153시간×9개월×2개소(19년) 18명×12천원×153시간×6개월×2개소(20년)	2,926,190	
계			9,907,965	

■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세입예산액 : 2,857,710천원

- '20년 수탁 운영 어린이집은 총5개*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

* 100인 어린이집 1개소, 75인 어린이집 2개소, 45인 어린이집 2개소

- 각 어린이집의 예산액은 '연령별 보육료 기준 및 연령별 반 정원 배치 기준' 적용하여 산출함

	100인 규모(99인)	75인 규모	45인 규모
보조금	806,351천원	558,435천원	467,244천원
운영목표	1개소	2개소	2개소
소계	806,351천원	1,116,871천원	934,488천원
계	2,857,710천원		

- '20년 국공립어린이집 세입 예산(안) 산출은 복지부 '연령별 보육료 기준 및 연령별 반 정원 배치 기준'을 적용 산출함.

구분	정부지원 기준	명	연령별 보육료 수입	정원규모	대비	반별 인원 배치
장애	462천원	3	1,386,000원	3	3	6
0세	454천원	3	1,362,000원	6	6	9
1세	400천원	5	2,000,000원	10	10	15
2세	331천원	7	2,317,000원	14	14	14
3세	220천원	15	3,300,000원	12	15	15
4세	220천원	20	4,400,000원	0	14	20
5세	220천원	20	4,400,000원		13	20
수탁예정 어린이집 정원규모(총 영유아 수)				45	75	99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97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, 종사자 처우 개선,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'서울시 사회서비스원'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'서울시 사회서비스원'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'서울시 사회서비스원'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
 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 타워 12층
 - 규모 : 613.59 m^2
 - 위치도



- 소속기관('19년) : 종합재가센터 5개소

연번	기관명	소재지	개소(예정)일
1	성동종합재가센터	성동구 아차산로33	7. 23
2	은평종합재가센터	은평구 진흥로77	8월 예정
3	강서종합재가센터	강서구 공항대로325	9월 예정
4	노원종합재가센터	노원구 한글비석로432	10월 예정
5	마포종합재가센터	마포구 마포대로11길	11월 예정

○ 관련법령

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- 조례 :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
-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
-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·개발
-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,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
-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다. 총 소요예산(안) : 36,010,619천원

라. 산출근거

- 인 건 비 : 22,789,939천원(본부 및 소속기관)
- 사 업 비 : 13,220,680천원(사무운영비, 교육훈련비, 연구개발비 등)

마. 출연의 필요성

-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,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필요
- 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,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및 품질 관리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

-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,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정책팀 서영주 (☎ 2133-7747)